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9

제출일자 : '98년 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개정사유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운용조례”로 개정함.

나.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한 조항신설(제3조)

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별도계좌를 설치하고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관리하도록한 조항신설(제6조)

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도록하고 기금운용관을 총무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을 지역개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건전생활계장으로하는 조항신설(제10조)

마. 기금의 회계관리는 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하고 대장 및 증빙서류를 보관토록한 조항신설(제11조)

바.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다음회계연도 개시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한 규정 신설(제12조)

붙임 :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부. 끝.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작, 미진학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위하여 지원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금구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기금관리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제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사항
2. 지원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사항
3. 지급대상자의 선발심사에 관한사항
4. 기타 불우청소년자립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기금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7조(기금지급대상등) 기금의 지급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학자(진학)지원금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정한 중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2.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정착지원금 :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어농사업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어촌 청소년

제8조(대상자추천 및 선발) ①대상자는 읍·면·동장이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청소년은 제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읍·면·동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불량이나 지원목적외 사용등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수 있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지역개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건전생활계장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①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제천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수 있다.

④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